

1. 개정이유

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의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444호, 2023년 6월 13일 공포, 2023년 12월 14일 시행)됨에 따라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명령) 사유에 금번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【별표 7】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‘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’ 추가
(개정령안 별표 7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“제4조제1호 각 목”을 “제4조 각 호”로 한다.

별표 7 Ⅱ 제1호 나목 1) 중 “제4조제1호 각 목”을 “제4조 각 호”로 한다.

별표 7 Ⅱ 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타.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	법 제11조제3항제3호	영 업 장 폐쇄명령			

별표 7 Ⅱ 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타.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	법 제11조제3항제3호	영 업 장 폐쇄명령			

별표 7 II 제3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하.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	법 제11조제3항제3호	영 업 장 폐쇄명령			

별표 7 II 제4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하.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	법 제11조제3항제3호	영 업 장 폐쇄명령			

별표 7 II 제5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카.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	법 제11조제3항제3호	영 업 장 폐쇄명령			

별표 7 Ⅱ 제6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차.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	법 제11조제3항제3호	영 업 장 폐쇄명령			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변경신고) ①법 제3조제 1항 후단에서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3조의2(변경신고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4조제1호</u> <u>각 목</u> 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	5.----- ----- <u>제4조 각 호</u> ----- 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